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8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이성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석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1. 11.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65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1. 11.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65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29275), 2018.

10. 5. ‘D은 원고에게 3,204,66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아버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7. 23.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처 피고 B, 자녀 D, F, 피고 C는 2021. 11. 3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6517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65174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C가 1,000만 원을 송금한 날자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21. 7. 5.인 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람도 D의 처인 G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

별지